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7월 20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20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7. 19(월)	담당부서	무역구제정책과
담당과장	박형민 과장(044-203-5850)	담당자	김수현 사무관(044-203-5856)

한-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CEPA) 체결에 따른 무역구제제도 정비

- 「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문승욱)는 「**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**」 **일부개정령안**이 **7.20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**되어 「한-인도네시아(인니)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CEPA)」의 국내 발효('21.11월 예정)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함

< 한-인도네시아(인니)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CEPA) 개요 >

① **CEPA**(**C**omprehensive **E**conomic **P**artnership **A**greement,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) FTA(자유무역협정)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, 양국간 상품·인력이동 뿐 아니라 포괄적 교류·협력까지 포함

- 상품: RCEP(+3.3%), 한-아세안FTA(+14.7%) 대비 시장접근 개선
- 서비스: 2.7억명 서비스시장 진출기회 확대
- 협력: 체계적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협력챕터 강화

② **인니**는 세계인구 4위(2.7억명),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인구구조, 최근 연 5% 이상 경제성장, '30년 세계경제규모 4위 전망 (스탠다드차터드, '18년)

③ 싱가포르('06년 발효), 베트남('15년 발효)에 이은 **아세안 국가와의 세 번째 양자 FTA**임

□ **(추진배경) 한-인니 CEPA 협정이 정식 서명**('20.12.18) 됨에 따라, 협정에 규정한 **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**(긴급수입제한조치) 등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령에 반영하여 **협정의 이행 근거**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

□ **(주요내용)** 금번 「**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**」 **주요 개정 내용**은 다음과 같음

① **FTA 세이프가드조치** 대상 국가에 **인도네시아** 포함

* WTO협정문은 다자간(글로벌) 세이프가드만을 규정하고 있으며, FTA 체결에 의한 양자간 세이프가드는 당사국간 합의수준에 따라 同 시행령에 추가하여 규정

② **잠정FTA 세이프가드조치** 신청 내용에 대한 **입수방법 관보게재** 및 **20일 이상 의견수렴기간 보장** 대상 국가에 **인도네시아** 포함

③ **FTA 세이프가드조치 기간이 1년 이상**일 경우, 일정기간을 주기로 **점진적인 조치완화**(자유화) 대상 국가에 **인도네시아** 포함

④ WTO 협정에 따른 **다자**(글로벌) **세이프가드조치의 재량적 적용배제*** **대상국가**에 **인도네시아** 포함

* FTA 체결국産 품목이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, 同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부 대상국가에 대해 다자(글로벌)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가능

□ 전윤종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"**금번 시행령 개정**은 CEPA 협정으로 인도네시아산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하는 등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, **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우리기업의 부담을 경감**할 수 있는 **법적 근거를 무역구제법령에 마련**했다는데 의의가 있다"고 평가하며,

○ 양국간 **CEPA 협정의 원활한 이행**과 이를 통한 **양국간 통상관계 발전**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"고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 김수현 사무관(☎ 044-203-585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